**[별지 제9-1호]**

|  |  |
| --- | --- |
| 해 외 직 접 투 자 신 고 서 (보 고 서) | 처리기간 |
|  |
| 신고인(보고인) | 상호 | 린드먼아시아글로벌파이오니어사모투자합자회사 | 사업자등록번호 | 860-88-00415 |
| 법인등록번호 | 110113-0020022 |
| 대표자 | 린드먼아시아인베스트먼트㈜ (인) | 주민등록번호 | 114-86-52854 |
| 소재지 |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34, 4층 | 전화번호：070-7019-4002 |
| 업종 | 64209 기타투자기관(사모투자) |
| 해외직접투자내용 | 투자국명 | 홍콩 | 소재지 | Rm 4905, Office Tower, Convention Plaza, 1 Harbour Rd., Wanchai, Hong Kong |
| 투자방법 | 증권투자(구주-보통주)\*1,160,000주 | 자금조달 | 자기자금 |
| 투자업종 | 21210(완제의약품제조업) | 주요제품 | 심뇌혈관 처방약 |
| 투자금액 | HKD 350,000,000.-\*(USD ) | 출자금액 | HKD 350,000,000.- |
| 투자비율 | 1.10%\* | 결산월 | 12월 |
| 투자목적 | 현지시장진출 (경영참여 사모투자) |
| 현지법인명(영문) | Sihuan Pharmaceutical Holdings Group Ltd. | (자본금：RMB 79,443,000) |
| \*투자 방법(주수), 금액, 비율은 환율 및 시세에 따라 변동가능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고(보고)합니다.2017년 7월 일외국환은행의 장 귀하 |
| 위와 같이 신고(보고)되었음을 확인함 | 신고 번호 |  |
| 신고 금액 |  |
| 유효 기간 |  |
| 피신고(보고)기관 : 외국환은행의 장 |

210㎜×297㎜

〈첨부서류〉1. 사업계획서(자금조달 및 운영계획 포함)

2. 합작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계약서

3.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금전의 대여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인 경우에는 금전대차계약서

4. 해외투자수단이 해외주식인 경우, 당해 해외주식의 가격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
※ 업종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코드(5자리) 및 업종명을 기재

※ 출자금액란에는 액면가액과 취득가액이 상이한 경우 액면가액을 기재

유 의 사 항

1. 본 신고 금액은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아 투자(송금)하되 투자(송금)후 즉시 동 사실을 관계증빙 첨부하여 당행에 보고하여야 함

2. 본 신고(보고)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「외국환거래규정」제9-5조제3항에 의거 피신고(보고)기관에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. 다만, 투자자의 상호·대표자·소재지(주소, 전화번호 등), 현지법인명, 현지법인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피신고(보고)기관에 통보하여야 함

3. ｢외국환거래규정｣ 제9-9조에 의거 다음의 보고서를 당행에 제출할 것

(1) 외화증권(채권)취득보고서(현지법인 및 개인기업 설립보고서 포함)

: 투자금액 납입 또는 대여자금 제공 후 6월 이내

(2) 연간 사업실적보고서 :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

-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불 이하인 경우 연간 사업실적보고서는 현지법인 투자현황표로 대신할 수 있음

4. 결산 후 배당금은 전액 현금으로 국내로 회수하거나 인정된 자본거래로 전환할 수 있음

5.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등을 받아야 함

6. 본 신고 후 ｢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｣에 의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자로 규제될 경우 또는 조세체납의 경우 신고금액 중 미송금액은 그 효력을 상실함